

여성 Partner 예금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여성Partner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,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'예금거래 기본약관'과 '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'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명의 여성 개인으로 합니다. (개인사업자 불가)

제4조 가입제한

이 통장의 가입은 1인당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통장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6조 가입기간

이 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 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
 1. 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- 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 1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미만
 2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이상

제8조 우대서비스의 제공

- ① 이 예금의 가입자에 대해 '기본우대서비스'와 '추가우대서비스' 를 제공합니다.
- ② 이 서비스의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동 내용 변경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 관련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.
- ③ '기본우대서비스'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대 상: 이 예금 가입자

2. 우대내용

- 이 예금 가입후 최초 6개월간 이 예금을 통하여 거래하는 인터넷(모바일)뱅킹의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

④ '추가우대서비스'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대상 : 거래시점 현재 공과금 (지로, CMS) 1건이상 자동이체하고, 아래 요건중에서 1건이상 해당하는 경우

- 여성Partner예금의 전월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

- 여성Partner예금이 KEB하나카드 결제계좌이고 전전월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

- 여성Partner예금으로 과거 3개월이내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
* 급여이체는 전산상으로 자동인식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.

2. 우대내용

- 이 예금의 인출 또는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우대합니다.

•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: 인터넷(모바일)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

• CD/ATM 이용수수료 우대 : 당행 CD/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의 마감후 당행이체 및 마감후 인출시 수수료 면제. 타행이체는 면제가 안 됨.

- 외환당발송금수수료 50% 우대 (여성Partner예금 출시일로부터 1년간 우대)

- 외화현찰(지폐)매입/매도,T/C 매도, 해외 송금시 환율우대

USD / JPY / EUR : Spread의 30%